

#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-미 FTA 활용

## 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B사는 스피커,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한국과 중국,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, 미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
- 제품소개

품명	HS번호	원산지결정기준(한·미 FTA)	관세혜택
스피커	8518.29	4단위 세번변경 (CTH) 또는 제8518.90호로부터의 변경 (단, 집적법 35% 이상 또는 공제법 45% 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한 것)	4.9% ▶ 0%

## 2. FTA 활용과정

### 1. FTA 활용시 장애요인

- 한·미 FTA를 對美 수출확대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FTA 협정을 이해하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음

### 2. 활용과정(극복과정)

- HS4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조정가격의 10% 이내인 경우 '미소기준'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없이 자체적으로 FTA 활용 결정

수출물품 원재료 명세서(BOM)

부품	HS코드	부품의 부가가치 비중(%)			비고
		제품A	제품B	제품C	
FRAME	7209	※ 세번변경 기준 불충족 원재료의 부가가치 비중 모두 10% 미만으로 미소기준 충족			4단위 세번변경
CENTER POLE	7209				
TERMINAL	8518	1.45	1.15	1.21	미소기준 적용
-	-	기재생략			4단위 세번변경

### 3. 활용 효과

- FTA 관세혜택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0% 수출증대 효과를 거둠
- 세번변경기준의 완화규정인 ‘미소기준’을 물품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·비용 절감

### 4. 시사점

-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각 원재료별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미소기준 등 보완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일정 역내부가가치조건 충족 시 베트남 등 FTA 체결국 현지공장에서 반제품을 무관세 수입 후 가공수출 형태의 국제분업 가능